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135호 2020. 8. 2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45호 방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4차)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4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805호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
○ 삼척시 공고 제818호 신조 공인 공고 ---------- 13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19호 도로의 지정 공고 ---------- 14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호 도로의 지정(변경) 공고 ---------- 17
○ 삼척시 공고 제82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20

공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0-145호

방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4차)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방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24.

삼 척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방림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바람직한 농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3. 사업비 : 500,000천원
   ○ 국고 (350,000천원), 지방비(150,000천원) [자부담 자부담 8,486천원 별도]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2리(방림마을)
   ○ 지역경관개선사업
   - 경관길 조성 (경관수 1,085주, 진입로 359.5m, 쉼터 2개소, 재활용 수집장 개선 5개소)
   - 경관길 정비 (CCTV설치 9개소, 마을이정표 5개소, 마을종합안내도 1개소)
   ○ 지역역량강화사업 : 주민교육, 마을브랜드 개발, 방림마을스토리텔링 개발
   ○ 주요변경사항

구분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당초	변경	증감
지역경관개선	CCTV공사	50,925	49,802	(감) 1,123
제경비	공사감리비	28,060	29,183	(증) 1,123

5.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6. 사업기간 : 2018. 05. ~ 2020. 12.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해당 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농정과 (☎ 033-570-3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0 - 14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28.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285-4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8.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139-5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285-4	20200828	가설건축물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2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8-1 (읍중동)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8 (읍중동)	20200828	건물번호 합병	20090626	지역도로명(대학로) 명칭활용 (도로명유지)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269	20200828	가설건축물	20090626	맹방해수욕장 명칭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3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 139-5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285-4	20200828	가설건축물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변경	2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8-1 (읍중동)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8 (읍중동)	20200828	건물번호 합병	20090626	지역도로명(대학로)명칭활용(도로명유지)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269	20200828	가설건축물	20090626	맹방해수욕장명칭활용	

삼척시 공고 제2020-805호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20.06.09.)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통합 계정 및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라. 통합기금의 관리·운영 및 이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마.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안 제9조)

바. 통합기금 회계공무원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사.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0. 8. 25. ~ 9. 1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 전화번호 : 033-570-3216, FAX : 033-570-3131
- 전자우편 : heracless20@korea.kr

5.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2. "최근 3년"이란 결산연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결산상 경상일반재원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일반경상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영)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예산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무, 위원회의 개최, 안건배부, 실비보상, 임기 등에 관하여는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통합기금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 제명 :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조 례 안 (시행규칙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0-818호

신조 공인 공고

「삼척시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삼 척 시 장

1. 등 록 사 유 : 농업기술센터 인증기 신규 설치
2. 등록 연월일 : 2020. 8. 27.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규격(cm)	인 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삼척시장인 (농업기술센터전용)	3.0×3.0 (정방형)		인증기 신규설치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20-19호

도로의 지정 공고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89-3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삼 척 시 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32-2번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15.8m, 너비 : 5.0m, 면적 : 87㎡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상맹방리	432-2	대	2,286	2,200	86	최*섭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12>

도로관리대장

(2면중 제 1면)

지정번호 [ ][ ][ ][ ][ ]-[ ][ ][ ][ ][ ]

대지위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지번 산89-3
건축주 변 * 수	생년월일 1956-07-27	허가(신고)번호 2020-근덕면-신축신고-31
도로길이 15.8 m	도로너비 5.0 m	도로면적 87.0 ㎡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 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또는인
상맹방리 432-2	87	2020.07	최 * 섭	1964.01.26	

작성자: 직급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유 범 희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지방시설주사 성명 박 중 희 (서명 또는 인)

(2면 중 2면)

위치도 <축척: 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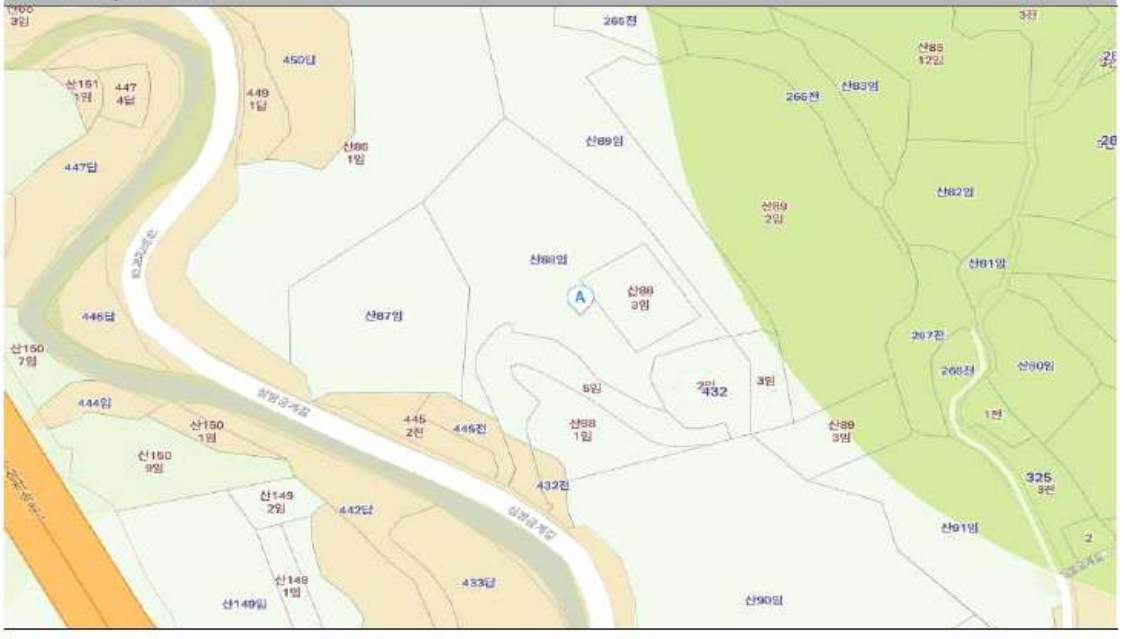

30304 - 26821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2면 중 2면)

현황도 <축척: 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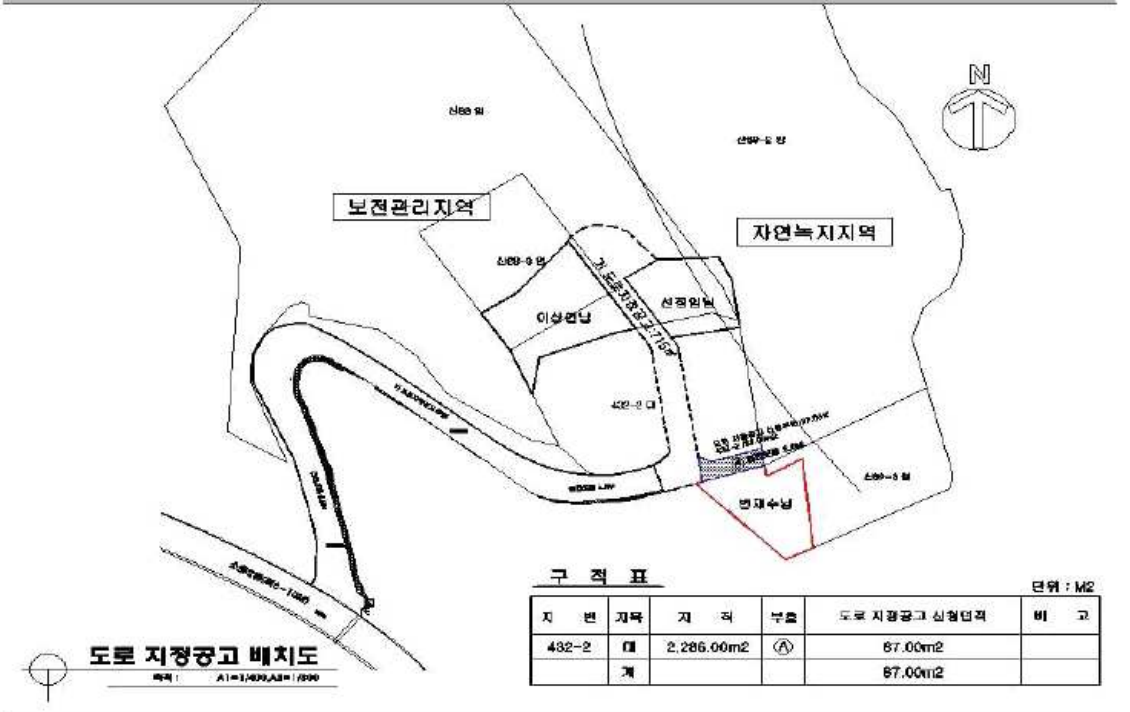

도로 지정공고 배치도

구 적 표

단위 : M2

지 번	지목	지 적	부호	도로 지정공고 신청면적	비 고
432-2	대	2,286.00m2	Ⓐ	67.00m2	
	계			67.00m2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20-20호

도로의 지정(변경) 공고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20-11호(2020. 06. 26.)호의 관련으로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88번지 외 2필지 상에 건축신고 시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삼 척 시 장

1. 제 목 : 건축신고(변경)에 따른 도로지정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내역(도로지정내역)

구분	도로위치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점유자) 성 명	이 해 관 계 인 동의여부	비 고
도로 지정	합 계		전 715 후 717			2020-근덕면-신축신고-17
	근덕면 상맹방리 432-2	2,286	376	최*섭	동의	
	근덕면 상맹방리 산88	13,217	310	최*섭, 선*임, 최*섭, 이*연	동의	
	근덕면 상맹방리 산88-3	1,355	전 29 후 31	이*연, 선*임	동의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12>

도 로 관 리 대 장

(2면 중 제1면)

지정번호 2020-		
대지위치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지번 산88
건축주 선*임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1975-07-25	허가(신고)번호 2020-근덕면-신축신고-17
도로길이 73.0m	도로너비 6.0~7.0m	도로면적 715.0 ㎡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상맹방리 432-2	376	2020.05	최 * 섭	1964.01.26	
상맹방리 산88	310	2020.05			
		2020.05	선 * 임	1975.07.25	
		2020.05	최 * 섭	1963.11.02	
		2020.05	이 * 연	1970.03.28	
상맹방리 산88-3	31	2020.08			
		2020.08	선 * 임	1975.07.25	

작성자: 직급 지방시설서기 성명 유 범 희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지방시설주사 성명 박 중 희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2면)

위치도 <축척: 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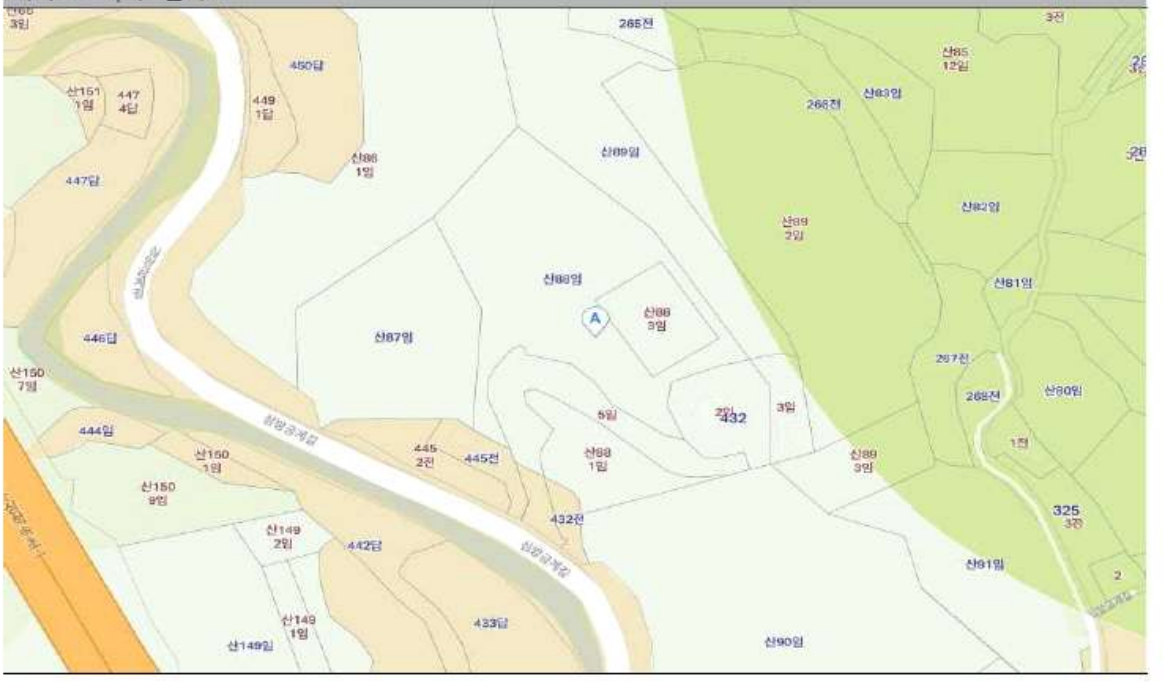

30304 - 26821대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2면)

현황도 <축척: 임의>

구 적 표

단위 : M2

지 번	지목	지 적	부호	도로 지정공고 산정려적	비 고
432-2	대	2,266.00m2	Ⓐ	376.00m2	
산88	임	13,217.00m2	Ⓑ	310.00m2	
산86-3	임	1,355.00m2	Ⓒ	31.00m2	
	계			717.00m2	

도로 지정공고 배치도

축척 : A1=1/400,A3=1/800

삼척시 공고 제2020-82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0.08.27. ~ 2020.09.10.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0.09.11.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안대○
	주 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221-1
		목조/세멘기와 (1층:78.65㎡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8. 27.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